
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(안)에 대한 협회의견(자조금관련)

◇…본회는 자조금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(안)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 자조금제도 시행령(안)에 대한 협회안을 마련, 정부에 제출했다. 다음은 자조금과 관련, 협회안으로 제출한 시행령(안) 전문이다.<편집자 주>……………◇

정 부 안	협 회 안	검 토 의 건
<p>제23조(자조금의 조성방법 등) (1)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업종별 생산자 단체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.</p> <p>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24조(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)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돼지, 닭, 우유 2.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<p>제25조(보조금의 지급기준) (1)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조금을 조성·운영하는 생산자단체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(2) 생산자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지급 신청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조금의 사용목적 2. 자조금의 조성액 및 사용액 3. 자조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내역 4. 기타 필요한 사항 <p>(3) 농림수산부장관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,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24조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농어민으로부터 조성하여 자조금을 매년 적립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육조절사업 2.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3.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. 기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<p>(4)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자조금의 조성방법 등) (1)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거출한 자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조성한다.</p> <p>(2) 자조금은 도축장, 도계장, 우유 및 계란처리장 등 농산물처리장과 배합사료공장 등에서 거출한다.</p> <p>(3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, 운용, 관리,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4조(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) 법 제13조 제2항의……………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유 2. 돼지 3. 닭 4.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<p>제25조(보조금의 지급기준) (1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>(2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>(3) 농림수산부장관이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축산물 소비촉진사업 2. 수매비축사업 3. 조사연구사업 4.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5. 신제품 개발사업 6. 정책개발사업 7. 기타 자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<p>(4) 삭제</p>	<p>자조금은 그 집단의 공동이익, 즉 집단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업전체의 문제를 위하여 조성·사용하는 자금으로 이러한 자금은 무임승차가 없이 이해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수익비례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 생산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액을 부과하며, 조성이 용이하고 공평해야 함.</p>